

2019년 제2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토론문

도경화 교수(건국대)

다양화에 따른 국가기록물의 종류, 형태, 범위를 정의할 필요 있다.

그에 따른 국가기록물의 보관형태, 보관주기도 검토할 필요 있다.

국가기록물은 생산시에 기록물에 대한 종류, 보관주기 등을 생산기관에서 선정한다. 다양한 국가기록물의 생산에 따라 현재의 한정된 문서 형태에서 폭넓은 문서 포맷을 생산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

단, 국가기록물은 일반정보와는 달리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및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고, 국가기록물은 일반 민간의 생산물과 달리 그 책임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상호 증빙이 되어야 하며, 시대가 변해도 기술과 관계없이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기록물지정->상태검증->위험관리 등 절차 표준화하고 다양화가 고려된 표준화가 중요하다. 표준화는 특히 통합관리와 재개봉시 중요하다.

정보공개의 정보, 국가기록물에 대한 정보 다양한 유형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전자 문서 외에도 전자화된 문서의 관리는 국가기록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국가기록원 외에 생산기관의 기록관의 기록물 생산관련 기관의 주체적 관리를 위해 장기검증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생산, 보존에 대한 온나라 기록물과의 연계, 인프라 지원도 중요

* (진본성) 기록의 내용 형상에 대한 것으로 생산자 생산시점 등이 입증될 수 있는(can be proven) 것

** (무결성) 기록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는 것 상세 ISO-15489 참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6조에는 진본성 확보와 무결성 확보를 위해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장기서명검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공인인증서의 불편성 한계에 따라 전자서명법도 개정되고 있지만 본인확인에 대한 요소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나 전자서명의 중요성, 기술적 신뢰도 검토 등에 따라 전자서명 용도로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자서명이 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무결성 확보 등 신뢰성에 매우 중요하나 기술적으로 대체될 만한 기술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실제 본인이 업무 시 과기부와 3년 이상 검토를 하였으나 아직은 대체기술이 없는 상태이다. R&D로 풀 수 있을려나 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국가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떠오르고 있으며 국가기록물은 곧 국가 행정기관들의 신뢰성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기록물 관리에 따른 편리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선 문제는 다른 ICT 시스템과는 달리 진본성, 무결성, 접근통제(허용) 등을 위한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가직을 수행하고 있는 생산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단순한 국가발행 문서인 판결문 등에 국민의 진본성 확보 요청 및 문의가 문제까지 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책임소재에 업무분장과 진실성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ICT의 기술적 해결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신뢰성확보를 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방식을 국가기관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물론 블록체인이 전자서명과 같은 역할을 완벽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기록물의 종류로 클라우드 문서,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가는 시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행히 국가기록원에서 ISP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자면 공공기관까지의 주최적인 국가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장기검증을 위한 국가기록물검증/지원센터의 설립을 고려함이 중요하다.

효과적이고 신뢰적인 기록물 관리의 전문적 연구와 공공기관까지 관계 기관들의 집행을 위해서는 표준에 적합한 주최적 방법인지를 검증해주고 문의/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의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변화와 함께 15년이 넘도록 변화를 고려하여 왔으나 지금이 그런 변화를 혁신적으로 할 시기라고 본다.